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1491
----------	------

제출년월일: 2013. 4.

제 출 자: 이재문의원 송석호의원
홍진옥 의원

1. 제안이유

- 충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의 설립 ·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립 박물관 · 미술관의 장려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지원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충주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 18조)
-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2013. 3. 18. ~ 4. 8.) : 의견없음
- 조례안 : 따로 불임
- 관계법령 : 따로 불임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충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제4조(장려와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기준) 시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보조) 시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자료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문화·예술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 보조

2. 제9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할 때
2. 질병·장기출타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하면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돋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 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